

에너지 절약 추진지침

본 내용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절약에 관한
지침 홍보 협조요청으로 회원사의 에너지 절약
방안에 도움을 주고자 참고자료로 제공하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편집자주 -

1. 목적

○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, 에너지 수입을 절감하는 동시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의식을 확산시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함.

- 기관별 정책수행시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충분히 반영
-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- 승용차 10부제 준수 철저
-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적극 홍보

2. 기본방향

○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기여

-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·관리하여 절약 효과 제고
- 기관별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및 에너지 절약 전담조직 운영의 활성화

○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여 범국가적 절약 분위기 제고

3. 추진내용

공통부문

가.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

○ 각 기관별 「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」운영의 활성화

-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 위원회를 구성·운영
-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

진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

- 에너지 절약 담당부서 지정 · 운영
- 담당부서는 총무과 또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지정

나.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 · 관리

○ 1999년도 연료 ·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최대 10%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되, 기관별로 매년 절감목표를 신축적으로 설정 · 추진

다.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 지도 · 감독강화

-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분기별 1회이상 지도 · 점검 의무화
- 소속 · 산하 기관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분석 · 평가 및 개선조치
- 에너지 절약 관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

건물 부문

가. 에너지절약 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

- 각 소속 · 산하기관, 사업소 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(ESCO)을 통한 에너지 절약사업의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추진계획 수립 · 시행
 - 타당성 검토 결과, 사업성 있는 것으로 입증된 기관은 에너지 절약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, 사업성 없는 기관은 자체 예산에 반영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단계적 교체
 - 건물 규모가 작아 경제성이 낮은 단위 기관들은 여러기관들을 통합하여 종합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

나.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

○ 모든 공공건물 신축(증 · 개축포함)시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 고시)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 사용 의무화

- 대상 고효율기기 : 26mm32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, 전구식 형광등 기구,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, 조도 자동조절 조명 기구, 고효율 유도전동기, 폐열회수용 환기장치, 고기밀성 단열창호, 산업 · 건물용 가스보일러, 가정용 가스보일러, 고효율 펌프, 원심식 냉동기, 모니터 절전기, 무정전 전원장치 등

다. 에너지 관리진단의 내실화

○ 중앙집중방식의 냉 · 난방을 실시하는 대형공공건물은 필요한 경우, 에너지 관리공단 등에 에너지 관리용역진단을 의뢰하여 에너지 손실요인과 개선방안을 발굴

- 에너지 관리공단은 공공기관에서 에너지 진단을 신청할 경우, 우선적으로 진단 실시
- 진단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사업 또는 자체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개선추진

라.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

- 빙축열 · 가스흡수식 냉방기 설치 또는 지역냉방 도입을 통한 전력절감 도모
- 최대수요전력 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한 전력피크부하 감소
- 공공건물의 적정 냉 · 난방온도 관리
 - 난방온도 : 18~20℃,
 - 냉방온도 : 26~28℃

○ 모든 공공기관의 절전형 사무용기기 사용 의무화

- 컴퓨터, 복사기, 팩시밀리 등 대기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, 「절전형 사무용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」(산업자원부 고시)에 따라,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제품 사용 의무화

○ 엘리베이터 격층운행 등 합리적 운영

- 3층 이하 운행금지(다만, 환자·장애자·화물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)
-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는 승강기 제한 운행
- 10층 이상 건물은 일정층 이상·이하로 구분하여 승강기 운행등

수송부문

가. 경차보급 활성화 촉진

○ 경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경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추진

○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, 기관별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%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

-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반영

나.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

○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승용차 운행 자제방안을 강구·시행

- 부제운행(10부제, 5부제, 주1회 휴차제 등)

- 승용차 함께타기 활성화

- 통근버스 확대운영, 인근 기관과 통근버스 카풀제 운영등 추진

○ 부제운행, 승용차 함께타기 등 승용차운행자제 직원 및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등

다.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

○ 각 기관별 공영주차장 등에 자전거 주차 시설 확대설치

- 기관특성에 맞게 검토 추진

교육·홍보부문

가. 각종 교육과정 등에 에너지 분야 포함

○ 각종 교육시 에너지 절약 관련 교과목의 적극 실시

○ 구내방송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실천 교육 강화

나. 에너지 절약 홍보의 강화

○ 각 기관별 홍보·출판물에 에너지 절약 내용 포함

4. 행정사항

가. 각 기관별 「에너지 절약 추진계획」 수립·시행 및 평가

○ 각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

○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매월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을 평가하고, 미비점을 개선·보완

- 매월별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자체점검 및 분석·평가하고, 그결과를 차기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추진

나.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(보고)

○ 각 기관은 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(평가)을 매분기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(보고)

다.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의 점검·평가 및
수범사례 발굴확산

보해주시고, 우리부는 그 내용을 언론등을 통
해 적극 홍보할 계획임.

○ 각 기관(유관기업 포함)이 추진한 사례
중 모범사례는 우리부로 그자세한 내용을 통

라.보고양식 : 별첨

(별첨1)

에너지절약 실천계획 및 실천

구 분	추진 계획	추진 실적	비 고 (에너지 절감효과)

※ 기타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은 별도 기재